

부산지방법원 2024. 3. 21 선고 2023나5155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4. 3. 21 선고 2023나51557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3. 5. 2 선고 2022가소13865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성욱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4. 3. 7.

판결선고 2024. 3. 21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. 5. 2. 선고 2022가소13865 판결

주문

-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원고에게 2,562,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6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,562,8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,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)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갑 제1, 3호증, 을가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- 1) 원고는 2015. 6.경부터 부산 동구 C건물(이하 ‘이 사건 빌라’라 한다)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외벽 타일 및 드라이비트 재시공, 옥상바닥 방수공사, 수도관 직접연결 공사, 주차장 정비공사, 건물 내부 복도 벽면 타일 재시공 등의 리모델링 공사(이하 ‘이 사건 공사’라 한다)를 진행하여 2017. 2.경까지 이를 마무리하였다.
- 2) E는 2015. 8. 22.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 D호를 매도하였는데, 위 매매계약서에는 ‘매수인은 건물외벽 공사 중임을 알고 매매함과 동시에 외벽공사에 관한 모든 부분을 매수인이 진행하기로 한다. 매도인에게는 삼천이백오십만원을 주고 공사대금 삼백만원은 입주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불하기로 한다.’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.
- 3) 피고는 2015. 8. 28. 이 사건 빌라 D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4) 이 사건 빌라 D호의 전유부분 면적은 21.68㎡이고, 이 사건 빌라 전체 호실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344.88㎡이다.

5)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등을,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(부산지방법원 2018가소6242호, 항소심 같은 법원 2020나51990호), 위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,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여 이 사건 빌라의 효용이 증가하였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선행소송’이라 한다). 이 사건 선행소송의 감정 결과 이 사건 공사금액은 합계 40,768,987원으로 확인되었다.

나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이 사건 빌라의 공용부분 시설의 효용성이 이 사건 공사금액만큼 개선되었다고 할 것이어서,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종료 당시 이 사건 빌라 D호의 소유자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사금액을 해당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2,562,838원(= 40,768,987원 × 21.68㎡/344.88㎡)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,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2,562,8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3. 6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다.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미 원고의 부당이득청구가 기각되었다고 주장하나,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는 당사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E에 대한 부당이득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단지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E가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윤성, 판사 양소영, 판사 김혜림